## 광명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

제정 1994. 4.11 조례 제 824호 개정 2008. 6.16 조례 제1587호

2008. 6. 16 조례 제1588호(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)

일부개정 2013. 8. 1 조례 제1936호(조례 중 인용조항 등 일괄정비 조례) 일부개정 2018. 7. 31 조례 제2372호(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)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광명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 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수당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시험수당을 지급한다. <개정 2013. 8. 1. 2018. 7. 31>
  - 1. 문제의 출제·심사·선정·편집·편찬·채점에 종사하는 사람
  - 2.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
  - 3. 시험감독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
  - ②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 하다.

[전문개정 2008. 6. 16]

제3조(여비)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5급공무원에 준 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4조 삭제〈2008. 6. 16〉

제5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〈2008. 6. 19 조례 제1587호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〈2008. 6. 16 조례 제1588호,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광명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

부칙〈2013. 8. 1 조례 제1936호, 조례 중 인용조항 등 일괄정비 조례〉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〈2018. 7. 31 조례 제2372호,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〉 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 생략